산학협력단 성과급 지급내규

제정 2009. 05. 01
제1차 개정 2011. 07. 19
제2차 개정 2012. 09. 25

제 1조(목적)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내 각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의 성과급 지급기준,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1. 07. 19)

제 2조(적용범위) 이 내규는 산학협력단 내 모든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에게 적용하며, 당해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. 다만, 학교기업 소속 교직원 및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1. 07. 19)(개정 2012. 09. 25)

제 3조(용어의 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급여'라 함은 산학협력단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말한다.
2. '수익금'이라 함은 산학협력단 내 각 기관별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, 재료비, 각종 공과금 및 사용기자재(기계기구)의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.
3. '성과급'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각 기관별로 일정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익금에 기초하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.

제 4조(성과급 지급규모의 산출) 성과급 지급규모와 관련하여 수익금은 별표 1과 같은 항목을 활용하여 산출하고, 각 기관별 수익금 대비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(2012. 09. 25 개정)

제 5조(성과급 지급절차) ①각 기관의 장은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소속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내에서 성과급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.(2012. 09. 25 개정)

②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각 기관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급 지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되, 지급대상자별 성과급 지급액은 기여도에 기초하여 차등기재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 07. 19)

③산학협력단장은 성과급 지급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, 지급할 경우 각 기관장과 협의하여 지급액을 가감할 수 있다.

제 6조(성과급 지급시기) 성과급은 회계연도 결산 후 각 기관별 요청에 따라 연1회로 일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내규는 2011년 0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변경내규는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2조 - 제5조 및 별표1, 별표2는 2012회계연도 운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부터 적용한다.

별표1) 수익금 산출항목표

수익금 산출항목표

❑ 각 기관별 수익금을 산출하기 위한 수입 및 지출항목은 다음과 같으며, 수입총액에서 지출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산출한다.

수 입 항 목	지 출 항 목
▪ 각종 검사수수료 ▪ 설비자산 사용료수익 ▪ 인증수수료수익 ▪ 임대료 ▪ 사용료 ▪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금 ▪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금 ▪ 기타 수입	▪ 소속 직원의 급여총액 ▪ 재료 및 소모품 등 구입비 ▪ 활용기자재 또는 기계기구의 감가상각비 ▪ 교비로 전출을 약정한 학교시설사용료 ▪ 기관별 고유사업을 위한 운영비 ▪ 각종 제세공과금

※ 이자수익은 수입항목에서 제외함

별표2) 성과급 지급표

성과급 지급표

❑ 각 기관별 소속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의 성과급을 다음 표에 따라 지급한다.

수익금	기관별 성과급 지급 한도액	비고
4억이상	수익금의 7% 이내	기관별 소속 정규직원 및 계약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총액은 기관별 지급 가능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.
3억이상～4억미만	수익금의 8% 이내	
2억이상～3억미만	수익금의 9% 이내	
1억이상～2억미만	수익금의 10% 이내	
5천만원이상～1억미만	수익금의 15% 이내	
5천만원미만	수익금의 20% 이내	

별지 제1호 서식) 성과급 지급계획서

성과급 지급계획서

기 관 명		기 관 장	(인)

( )회계연도 수입-지출분석

수 입		지 출	
항 목	금 액	항 목	금 액
합 계		합 계	

성 과 급 지 급 계 획

지급사유				
지 급 액			지급인원	
세 부 지급내역	성명	주민등록번호	지 급 액	비 율
지급시기				

위와 같이 ( )회계연도 성과급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09. .

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